

정치관계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(23. 12. 28, 24. 1. 2)

I 공직선거법

1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조치 도입 (§ 82의8①·②, 250④, 255⑤, 261③4 신설 등)

현 행	개 정
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)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등(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, 이미지 또는 영상 등) 전면 금지(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) ▶ (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) 딥페이크영상등을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(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)하고, 표시의무 위반 허위 사실공표는 가중처벌

※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2 정보통신망 위법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삭제요청 근거 마련 (§ 82의4③·④)

현 행	개 정
▶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 「공직선거법」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 관련 <u>인터넷홈페이지 관리·운영자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</u> 에게 삭제요청 등 가능	▶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 「공직선거법」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<u>‘게시한 자’</u> 에게도 삭제요청 등 가능

※ 공포한 날부터 시행

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(§ 60의3①5)

현 행	개 정
▶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가능	▶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확대

※ 공포한 날부터 시행

II 정당법

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민주화(§ 36의2 신설)

현 행	개 정
<신 설>	▶ 정당은 당헌·당규 등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(선언적 규정)

※ 공포한 날부터 시행

III 정치자금법

1 여성추천보조금 지급구간 조정(§ 26②)

구 분	현 행		개 정	
	여성추천비율	보조금 총액	여성추천비율	보조금 총액
보조금 지급 구간			40%이상	40%
	30%이상	50%	30%이상 ~ 40%미만	30%
	20%이상 ~ 30%미만	30%	20%이상 ~ 30%미만	20%
	10%이상 ~ 20%미만	20%	10%이상 ~ 20%미만	10%

※ 법 시행 이후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·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

2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용도 구체화(§ 28② 후단 신설)

현 행	개 정
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.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2.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3.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4.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5. 여성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6.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,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

※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